

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 변경계약서

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(이하 "위탁자")와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(이하 "수탁자")는 2021년 4월 12일 『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』(이하 "원 계약")를 체결하였는바, 원 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변경 사항)

원 계약서 제 16 조(계약기간)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제15조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(이하 "계약기간")까지로 한다.	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제15조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년(이하 "계약기간")까지로 한다. 단,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②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, 계약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.

제 2 조 (본 변경계약의 효력)

본 변경계약은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원 계약이 종료되는 때 동시에 그 효력이 종료되고, 원 계약과 본 변경계약이 상호 상충 또는 모순 되는 경우에는 본 변경계약이 원 계약에 우선한다.

2024년 4월 1일

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“위탁자”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, 15층(태평로1가, 서울파이낸스빌딩)
회 사 명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법인이사 에스케이리츠운용 주식회사 (인)



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“수탁자”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, 현대차증권빌딩 18,19,20층
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정 지 호

